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02
----------	-------

발의연월일 : 2025. 6. 26.

발 의 자 : 이병진 · 허성무 · 강준현
권향엽 · 송옥주 · 문대림
송재봉 · 서삼석 · 이원택
박용갑 · 이상식 · 김 윤
박상혁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 분야의 실익 제고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 수익성 저하 등 농업 부문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면서 농가경제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노동간 소득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농업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특례는 농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농업기반을 지키는데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어 해당 특례가 유

지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농촌경제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 제1항).
-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 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 라.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2. 2030년 1월 1일-----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

-----2028
년 12월 31일-----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2030년 1월 1일-----

-----.